

## 입소 비용 (2025년)

### 가. 등급별 재가급여 월 이용한도액

(단위 : 원)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 등급 |
|-----------|-----------|-----------|-----------|-----------|---------|
| 2,306,400 | 2,083,400 | 1,485,700 | 1,370,600 | 1,177,000 | 657,400 |

### 나. 주야간보호 이용 시간당 금액

(단위 : 원)

| 장기요양등급 | 이용 시간에 따른 금액(원, 1일당) |                  |                   |                    |         |
|--------|----------------------|------------------|-------------------|--------------------|---------|
|        | 3시간 이상<br>6시간 미만     | 6시간 이상<br>8시간 미만 | 8시간 이상<br>10시간 미만 | 10시간 이상<br>13시간 이하 | 13시간 이상 |
| 1등급    | 40,650               | 54,490           | 67,770            | 74,660             | 80,060  |
| 2등급    | 37,630               | 50,470           | 62,780            | 69,160             | 74,170  |
| 3등급    | 34,740               | 46,590           | 57,960            | 63,900             | 68,520  |
| 4등급    | 33,160               | 45,000           | 56,380            | 62,290             | 66,930  |
| 5등급    | 31,580               | 43,400           | 54,780            | 60,710             | 65,350  |
| 인지지원등급 | 31,580               | 43,400           | 54,780            | 54,780             | 54,780  |

### 다.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 일부 부담 비율

| 구분                                                                                                             | 재가급여           |
|----------------------------------------------------------------------------------------------------------------|----------------|
| 일반                                                                                                             | 15%            |
| 기초수급권자                                                                                                         | 0%             |
| 기타 의료수급권자<br>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br>저소득층 (본인 일부 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br>에 관한 고시 해당자) | 6%<br>또는<br>9% |

### 라. 비급여 항목 세부 기준

#### (1) 기본원칙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및 실제 소요 비용만을 산정해야 하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다.

(2) 세부 기준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및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이며, 점심과 저녁으로 구성된다.

마.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1) 기본원칙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 비용을 수납하지 못한다.

(2) 주·야간보호의 세부 기준

- ① 주·야간 보호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 : 사용량에 따라 실비수납 가능, 또는 수급자가 원활한 경우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토록 함.
- ②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 비용 :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 용품(휴지, 비누, 수건, 실내화 등)에 대해서는 비용수납 불가
- ③ 각종 프로그램 비용 :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해당하므로 별도 비용수납은 불가. 단, 수급자의 개별적 욕구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수급자가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 그 밖의 비급여 등)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 시 상호 협의하며 수급자의 상태 변화 또는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변경 적용할 수 있다.

| 비급여 항목    | 금액               |
|-----------|------------------|
| 식사재료비(점심) | 3,500원×1식=3,500원 |
| 식사재료비(저녁) | 3,500원×1식=3,500원 |
| 간식비       | 1,500원×1식=1,500원 |